

◆ D-15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하수급인이
임금을 체불한 경우 연대책임 유무?

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는 경우 직상수급자가

①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금액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

②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

③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져야함. 그러나 이러한 귀책사유없이 하도급자가 부도등으로 근로자의 노임을 체불하고 지불능력이 없을시에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음.